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91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복기왕 · 여기구 · 박용갑
이상식 · 서삼석 · 김영배
조계원 · 부승찬 · 임호선
김우영 · 이재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에 관한 정보,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102조제3항제22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102조(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21. (생략)</p> <p>22. <u>제63조제2항</u>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p> <p>23. ~ 27.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1조의2에 따라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충전사업자에 관한 정보, 충전요금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에게 안내할 수 있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02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21. (현행과 같음)</p> <p>22. <u>제63조제3항</u>----- -----</p> <p>23. ~ 27.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